

기출문제 해설

1. 다음의 해당 조치에 대한 실시권자가 다른 하나는?

- ① 화재의 예방조치
- ② 소방교육.훈련
- ③ 소방지원활동
- ④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소방교육.훈련

[적중 POINT]

■ 교재명(금화도감 소방관계법규 기본서: P28)

■ 정답 및 해설 : ①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②④ 제17조(소방교육·훈련)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③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정답 ①

2.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사람

[적중 POINT]

■ 교재명(금화도감 소방관계법규 기본서: P44)

■ 정답 및 해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정답 ④

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협회장은 실무교육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알린다.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신고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협회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2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적중 POINT]

■ 교재명(금화도감 소방관계법규 기본서: P184)

■ 정답 및 해설 : 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대상, 교육일정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④

4. 다음 중 특수가연물의 수량이 옳게 연결된 것은?

- ① 사류 - 200킬로그램 이상
- ② 종이부스러기 - 1,000킬로그램 이상
- ③ 가연성고체류 - 1,000킬로그램 이상
- ④ 면화류 - 3,000킬로그램 이상

[적중 POINT]

■ 교재명(금화도감 소방관계법규 기본서: P 34)

■ 정답 및 해설 : 특수가연물(제6조관련)

품명	수량	
면화류	200킬로그램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킬로그램 이상	
넙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킬로그램 이상	
사류(絲類)	1,000킬로그램 이상	
뽕짚류	1,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고체류	3,000킬로그램 이상	
석탄.목탄류	10,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액체류	2세제곱미터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10세제곱미터 이상	
합성수지류	발포시킨 것	20세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것	3,000킬로그램 이상

정답 ①

5. 다음 중 소방지원활동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 ② 군.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 ③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 ④ 단전사고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적중 POINT]

■ 교재명(금화도감 소방관계법규 기본서: P 39)

■ 정답 및 해설 :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기출문제 해설

등,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삭제 <2015.7.24.>,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활동

정답 ④

6.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②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③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④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적중 POINT]

■ 교재명(금화도감 소방관계법규 기본서: P72)

■ 정답 및 해설 :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③

7.소방기본법의 총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ㄱ. 소방기관의 설치 등
- ㄴ.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ㄷ.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 ㄹ. 소방력의 기준 등
- ㅁ.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 ① ㄱ, ㄷ
- ② ㄷ, ㄹ
- ③ ㄴ, ㄷ
- ④ ㄹ, ㅁ

[적중 POINT]

■ 교재명(금화도감 소방관계법규 기본서: P8)

■ 정답 및 해설 : 소방기본법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정답 ④

8.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 ②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 ③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 ④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00㎡ (공연장의 경우에는 15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적중 POINT]

■ 교재명(금화도감 소방관계법규 기본서: P104)

■ 정답 및 해설 :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나.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 노인 관련 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마. 별표 2 제9호 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7.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정답 ④

기출문제 해설

9.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화재발생의 여건 변화에 관한사항
- ② 화재현황의 여건 변화에 관한사항
- ③ 화재예방의 여건 변화에 관한사항
- ④ 화재안전정책의 여건변화에 관한사항

[적중 POINT]

■ 교재명(금화도감 소방관계법규 기본서: P80)

■ 정답 및 해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제6조의3(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2조의3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화재현황, 화재발생 및 화재안전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 2.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정답 ③

10.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 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④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적중 POINT]

■ 교재명(금화도감 소방관계법규 기본서:P72)

■ 정답 및 해설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①

11.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하는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 ② 석유비축시설
- ③ 영화상영관 중 상영관이 10개 이상 것
- ④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적중 POINT]

■ 교재명(금화도감 소방관계법규 기본서: P140)

■ 정답 및 해설 : 국민안전처장관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

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4.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12.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정답 ③

12.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카펫, 두께가 5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
- ②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 ③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④ 암막·무대막

[적중 POINT]

■ 교재명(금화도감 소방관계법규 기본서: P129)

■ 정답 및 해설 :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동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정답 ①

기출문제 해설

13.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

- ① 관리자 자격의 취소 및 정지
- ②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 ③ 소방용품 성능인증 취소 및 제품인증 취소
- ④ 소방용품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적중 POINT]

■ 교재명(금화도감 소방관계법규 기본서:P189)

■ 정답 및 해설 :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관리자 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제3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 제38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3의2.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4. 제40조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5. 제4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정답 ③

14.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④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적중 POINT]

■ 교재명(금화도감 소방관계법규 기본서: P30)

■ 정답 및 해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①

15.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상가지역
- ②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③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④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적중 POINT]

■ 교재명(금화도감 소방관계법규 기본서: P29)

■ 정답 및 해설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정답 ①

16. 다음 중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① 관계대상물
- ② 소방대상물
- ③ 특정소방대상물
- ④ 소방구조물

[적중 POINT]

■ 교재명(금화도감 소방관계법규 기본서: P9)

■ 정답 및 해설 :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정답 ②

17.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조직된 소방대(消防隊)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 ① 의무소방원
- ② 자위소방대
- ③ 위험물안전관리자
- ④ 소방안전관리자

[적중 POINT]

■ 교재명(금화도감 소방관계법규 기본서: P9)

■ 정답 및 해설 :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정답 ①

기출문제 해설

18. 특수가연물 중 가연성고체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 ②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 ③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용점이 200도 미만인 것
- ④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

[적중 POINT]

■ 교재명(금화도감 소방관계법규 기본서: P34)

■ 정답 및 해설 : "가연성고체류"라 함은 고체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 나.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 다.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용점이 100도 미만인 것 / 라.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이거나 나뭇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정답 ③

[적중 POINT]

■ 교재명(금화도감 소방관계법규 기본서: P119, 121)

■ 정답 및 해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설비 /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 3.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정답 ③

19.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②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8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 ③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④ 상수도과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mm로 할 것

[적중 POINT]

■ 교재명(금화도감 소방관계법규 기본서: P20)

■ 정답 및 해설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정답 ②

20.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①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비상방송설비
- ②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피난설비
- ③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④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